[별표 3] <개정 2018. 2. 27.>

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(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)

근거법령	지역 등
1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	경제자유구역
별법」 제4조	
2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	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
6조	
3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	관광지 • 관광단지
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	도시・군계획시설 예정지(도시지
조·제43조	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)
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	지구단위계획구역(도시지역 외의
조제3항	지역만 해당한다)
6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5조	기업도시개발구역
7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호	도시개발구역
8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	물류단지
제2조제6호	
9.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	공공주택지구
10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	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
조제8호・제40조의2	
11.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・제11조	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
	업 예정구역
12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	택지개발지구